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복무기간 단축〉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00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지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13.
3. 회부연월일 : 2025. 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련의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수십년간 변동이 없어, 긴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입지원율이 감소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군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
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 ① (생략)	제34조(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 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u>3년간</u>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 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 ----- ----- <u>2년간</u>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¹⁾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등 중 원할

1) 제34조(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경우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²⁾하여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3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하려는 것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온 반면에 공중보건 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³⁾ 긴 복무기간 때문에 의무 분야 현역장교, 공중보건 의사 등으로의 편입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봄.⁴⁾

□ 다만, 같은 보충역 중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비슷한 편입 요건(전문면허 보유 여부) 및 복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공중보건 의사 등과 같은 복무기간을 두고 있고, 전문연구요원 또한 복무기간이 36개월임을 고려했을 때, 보충역 중 특정 분야의 의무 복무자만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은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장교인 학사장교, 법무장교, 군종장교의 경우도 의무 복무기간은 3년임.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무장교를 우선 선발하고, 잔여 인원을 공보의 등으로 편입

3) 1997년 공중보건 의사 제도 시행 시부터 복무기간 3년 유지, 1999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도 시행 시부터 복무기간 3년 유지

4) 참고로 동 법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0496,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2025.5.14.)됨.

< 보충역 및 장교 등의 복무기간 비교 >

구분		의무 복무기간	구분		의무 복무기간
보 충 역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3년	장 교	사관학교	10년
				학사장교	3년
				학군장교	2년4개월
				특수병과 (의무·법무 등)	3년
				일부 기본병과 (5급공채 합격자 등)	
	전문연구요원	36개월	부 사 관	단기복무	4년
	산업기능요원	34개월		RNTC	

□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 인원 증가와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현재 인력 규모 유지를 위한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추가 수요⁵⁾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공중보건 의사 및 의무장교 신규 편입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중보건 의사	1,211명	1,318명	1,035명	1,050명	1,114명	716명	743명
의무장교	722명	764명	834명	715명	771명	838명	716명

5)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 시 현 수준의 군·취약지역 의료인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무장교·공중보건 의사 수요는 연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국방부 설명)

＜공중보건 의사 및 의무장교 복무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중보건 의사	3,540명	3,499명	3,523명	3,365명	3,176명	2,854명	2,551명
의무장교	2,449명	2,473명	2,446명	2,438명	2,426명	2,425명	2,443명

□ 국방부 및 병무청은 공중보건 의사 등의 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복무기간 단축 결정의 불가역성, 병역 의무 형평성에 민감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 의사 등의 복무기간 단축을 통하여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율을 높여 의료취약지역 진료 공백을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임.⁶⁾

문 의 처

02)6788-5307

6)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은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공중보건 의사 및 군의관 지원을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임.